

# 제119차 이사회 의사록

## ○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

일 자	2016. 12. 23 (금) 16:00	기록자	정 호 상
장 소	세종문화회관		
재적이사	총 13 명		
출석이사	/ 2 명	불참	/ 명
참 여 자	감사 / 명		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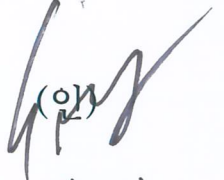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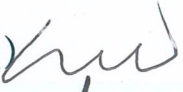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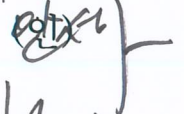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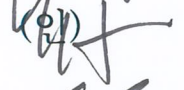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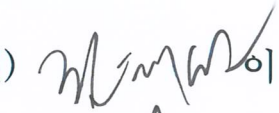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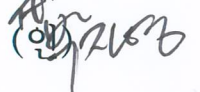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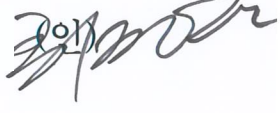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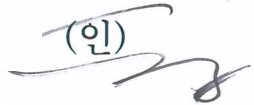
## ○ 의결사항

의안번호	건 명	의 결 내 용
제321호	(재)세종문화회관정관 일부개정정관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22호	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23호	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24호	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25호	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26호	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27호	상벌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28호	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29호	호봉제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30호	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31호	2015년 순세계잉여금 처리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32호	2016년 중장기발전기금 과실금 처분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33호	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제334호	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	의결 (원안)· 수정 · 보류 · 부결

## ○ 회의결과 : 별첨

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.

2016년 12월 23일

이사장	김	(인)		이사	송	(인)	
상임이사	이 승 열	(인)		이사	안	(인)	
이사	고	(인)		이사	이	(인)	
이사	권	(인)		이사	최	(인)	
이사	김	(인)		이사	한	(인)	
이사	김	(인)		감사	최	(인)	
이사	박	(인)					
이사	성	(인)					

# 세종문화회관 「제119차 이사회」 회의록

## 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6. 12. 23 (금) 16:00~18:22
- ◆ 장 소 : 회의실(사무동 4층)
- ◆ 참 석 : 13명(이사장 및 이사 12, 감사1)  
이사장-김00, 이사-권00, 김00, 김00, 성00, 송00, 안00,  
이00, 이00, 최00, 고00, 박00, 감사-최00
- ◆ 안 건
  - 제321호 (재)세종문화회관정관 일부개정정관(안)
  - 제322호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  - 제323호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  - 제324호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  - 제325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  - 제326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  - 제327호 상벌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  - 제328호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  - 제329호 호봉제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  - 제330호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  - 제331호 2015년 순세계잉여금 처리(안)
  - 제332호 2016년 중장기발전기금 과실금 처분(안)
  - 제333호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(안)
  - 제334호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- ◆ 보고사항
  - 보고사항 2016년 기관성과급 예산전용

## I. 성원보고

- 재적이사 13명중 12명이 참석하여,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하다

## II. 의안심의

- 이사장 김00 : 제321호 안전 (재)세종문화회관정관 일부개정정관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는 이사 정수 15인 이내에 근로자이사 2인을 포함하고, 제9조(임원의 임면) ①항은 근로자 투표를 거쳐 추천된 근로자이사후보자 조문을 보완하였으며, 제10조(임원의 임기) ②항 및 ⑤항은 근로자이사의 결원 발생시 근로자투표로 새로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 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내용을 반영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일부 내용을 개정(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→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,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)하고, 근로자이사의 결격사유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해당자(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)내용을 보완하였으며, 제24조(의결사항)에 “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”을 신설·보완하여 안전분야사업의 신규 외주 및 안전요인 내재 업무 재계약 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에 원안대로 가결하다.
- 이사장 김00 : 제322호 안전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이사 권00 : ‘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’을 4조 11항으로 신설했는데, 10호에 ‘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’이 있으므로, 10호와 11호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
- 전원 : 해당조문의 순서를 바꿔서 안전을 수정하여 가결하다
- 이사장 김00 : 제323호 안전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제9조(공개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)에서 근로자이사의 경우 사내 공고

를 통해 공개모집토록 보완하고, 제12조(심사기준)과 관련하여 근로자이사의 심사 기준은 자격, 전체 근로자의 투표결과 등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, 제13조의 2(근로자이사 후보 심사절차 및 방법)에서는 근로자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, 제14조(임원후보의 추천)에서는 근로자이사 후보의 경우 근로자 대표성을 고려하여 근로자투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, 제15조(임원후보 추천 등 제한)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를 수정 보완하며, 【별표 1】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을 근로자 이사의 경우, 회관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원안대로 가결하다.

- 이사장 김00 : 제324호 안건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회계규정 제126조의 ②항의 경우 감사의 취지를 살려서 좀 더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업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용어의 정리와 제한기간 등 조문을 재정리하여 다음번 이사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다.
- 이사장 김00 : 제325호 안건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제8조(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) 3항 관련 중징계 이상 처분요구 직원에 대한 심의 외 징계에 대한 모든 심의에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토록 개정하고, 제10조(채용의원칙)관련 공개채용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 삭제, 제14조(결격사유)관련 회관 재직 중 징계에 의한 해임처분자도 기존3년에서 5년 동안 취업 제한토록 규정 강화, 제21조의2(공로연수) 공로연수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하다.
- 이사장 김00 : 제326호 안건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제326호 보수규정은 보수규정<별표2>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의 '9. 특수업무수당'중 '법정선임수당' 항목에 공연법과 공연법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기존의 무대안전(전기)담당수당과 무대안전(방재)담당수당을 안전관리담당(공연)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다
- 이사장 김00 : 제327호 안건 상벌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입찰비리의 경우 징계의결 감경 예외사항 추가, 입찰비리 관련 중징계 이상 조항을 신설하며,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고, 당초 2단계 감경까지 있었던 징계감경기준을 1단계로 개정하는 것에 원안대로 가결하다

- 이사장 김00 : 제328호 안전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서울시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라서 『공무원여비규정』 및 『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』에 일치하도록 규정정비 하는 것에 원안대로 가결하다.
- 이사장 김00 : 제329호 안전 호봉제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2016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(2016.12.7)에 따라 임금인상 3%를 반영하는 것과 공연법에 의거하여 특수업무수당 중 안전관리담당자(공연)의 수당을 신설하고, 법정선임수당 항목에 안전관리담당 추가 및 무대안전(전기·방재)담당을 삭제하는 것에 원안대로 가결하다
- 이사장 김00 : 제330호 안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채용절차에 공개채용 예외조항을 『시 투자·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』에서 명시한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에 원안대로 가결하다
- 이사장 김00 : 제331호 안전 2015년 순세계잉여금 처리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2016 회계연도 내 유보상태인 2015년 잔여잉여금을 2016년으로 전액 이월하는 것에 원안대로 가결하다
- 이사장 김00 : 제332호 안전 제2016년 중장기발전기금 과실금 처분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기금의 과실금(이자)을 2016 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다
- 이사장 김00 : 제333호 안전 2016 회계연도 예산이월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지방재정법 제8조(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)에 의거 2016년 예산에 대한 집행은 당해연도 12.31로 완료해야 하지만, 문화예술기관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연말연초에 걸쳐서 진행되는 공연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을 2017년으로 이월하는 것에 원안대로 가결하다

- 이사장 김00 : 제334호 안건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.
- 전원 : 2017년 전체예산 479억4,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206억8,900만원이고, 출연금은 270억100만원, 순세계잉여금은 2억5,000만원, 지출은 사업비가 150억 6,700만원, 인건비 및 성과급이 212억7,500만원, 일반운영경비는 115억9,800 만원에 원안대로 가결하다

### Ⅲ. 보고사항

#### 【 2016년 기관성과급 예산전용 】

- 경영본부장 김00 : 2015 사업연도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관성과급 지급률 130%를 결정 받았으나 기관성과급 예산편성은 매년 70%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잔액에서 예산전용하는 것을 보고하다

### Ⅳ. 폐회선언

- 이사장 김00 : 재단 안전에 여러 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표 하고, 다음 이사회 개최일은 2월 24일로 잠정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